

제34회 영주시의회(정기회)
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
'98.12.26.(토) 10:00

의 안

【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(안)】

산업건설위원회

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(안)

의안 번호	2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1998. 12 . .

제출자 영주시장

1. 제정이유

개정된 수도법('97. 8. 28 법률제5395호)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, 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기능을 수행함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, 일반시민 및 상수도업무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함(안 제3조,제4조)
- 다.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고,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(안 제6조)
- 라.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(안 제7조)

- 마.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함(안 제8조)
- 바.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등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- 사.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(안 제10조)
- 아. 동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영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함(안 부칙제2항)

3. 제정조례(안) : 덧붙임

4. 참고자료 : 덧붙임

- 표준조례안 1부.
- 관계법령(발췌) 1부.
- 입법예고결과 1부.

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
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지문
3.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.

1.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(여성단체 대표포함)
3.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

제4조(임기 및 직무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(6개월이상)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,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
4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5.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

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 및 의사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①위원회의 안전작성,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수당등) ①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,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.

제10조(통보)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영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(표준안)

○○시.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○○시.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○○시.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
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
3.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.군수가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.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.

1.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(여성단체 대표포함)
3.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

제4조(임기 및 직무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①시장.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(6개월이상)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3.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,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
 4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 5.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
-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·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 및 의사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장은 시장·군수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①위원회의 안전작성,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②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·군수가 임명한다.

제9조(수당등) ①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,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“○○시·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②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.

제10조(통보)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·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(발췌)

【수도법】

제19조의2 (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) ①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. <개정97. 8. 28>

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<개정 97. 8. 28>

입 법 예 고 결 과

- 조례명 : 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
- 예고방법 : 영주시보 제148호('98. 10. 22)
- 예고기간 : '98. 10. 22. ~ 11. 11. (20일)
- 제출의견 : 없음